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5-120 관련

발의년월일 : 2025. 10. 23.
발 의 자 : 남해석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에 있어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위촉 가능한 인원수를 상향 조정(1명→2명)하여 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내용 변경(안 제7조제3항제1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“마포구의회 의원 1명”을 “마포구의회 의원 2명”으로 한다.

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(생 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. 마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3. ~ 5. (생 략) ④·⑤ (생 략)	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마포구의회 의원 2명 2. 구 --------- 또는 --------- (개정안과 같음)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